

도서편찬특별위원회 규정

2006년 3월 1일 제정

1. 목적

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회명의로 도서출판을 위한 도서편찬특별위원회(이하 위원회로 약칭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구성

- 1) 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공, 연구업적, 지명도, 지역적 분포 등을 두루 고려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- 2)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회의 이사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이 사회의 추인을 받는다.

3. 임기

- 1)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2) 해외파견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

4. 직무

- 1) 학회이름으로 편찬되는 조경학 관련 교재 및 모든 도서에 관한 사항
- 2) 집필책임자 및 도서출판 검토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
- 3) 도서편찬에 관한 학회지원 및 출판에 관한 사항
- 4) 교재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5) 기타 도서편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지침에 준한다.

5. 회의 및 의결

- 1) 위원장은 도서 편찬을 위해 위원회의 소집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마다 소집하며, 인터넷에 의해 진행할 수도 있다.
- 2) 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,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
※별첨: 도서편찬 등에 관한 지침

1. 일반사항

- 1) 조경학회 명의로 출판되는 모든 도서는 총인세의 30% 내에서 학회운영경비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2) 조경학회 명의로 출판되는 모든 도서는 위원회와의 협의와 도서내용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.

2. 교재편찬 등에 관한 사항

- 1) 집필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인 내외의 공동집필자를 최종 선정한다.
- 2) 집필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- 3) 학회에서는 이 기간 중에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 교재 당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며, 기간 내에 수행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.
- 4) 출판사는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집필책임자가 선정한다.